

## 17. 의무보험 과태료

### 개 요

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**의무보험(공제)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**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
『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(보험등의 가입의무)』

### 보험가입 의무자

- 자동차의 보유자(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)

### 과태료 및 범칙행위 처분

종 류	위반내용 및 금액	최고금액	관련법령
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	<b>가. 비사업용 자동차</b> • 10일 이내 · 대인 : 1만원 · 대물 : 5천원 • 10일 초과시 · 대인 : 매일4천원씩 가산, 최고60만원 · 대물 : 매일2천원씩 가산, 최고30만원	90만원 (과태료)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
	<b>나. 사업용 자동차</b> • 10일 이내 · 대인 I : 6만원 · 대물 : 5천원 • 10일 초과시 · 대인 II : 매일 1만6천원씩 가산, 최고200만원 · 대물 : 매일 2천원씩 가산, 최고30만원	230만원 (과태료)	
	<b>다. 이륜 자동차</b> • 10일 이내 · 대인 : 6천원 · 대물 : 3천원 • 10일 초과시 · 대인 : 매일1,200원씩 가산, 최고20만원 · 대물 : 매일 600원씩 가산, 최고10만원	30만원 (과태료)	
무보험 운 행	<b>가. 비사업용자동차</b> · 승용 : 40만원 · 승합, 화물, 특수, 건설기계 : 50만원	50만원 (범칙금)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, 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
	<b>나. 사업용자동차</b> · 승합 : 200만원 · 승용, 화물, 특수, 건설기계 : 100만원	200만원 (범칙금)	
	<b>나. 이륜자동차 : 10만원</b> · 사업용, 비사업용차량 · 이륜자동차	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	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2항

※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%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%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.



## ☎ 의무보험 과태료처분 사례

### ■ 자동차 양도·양수시

-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
-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의 검사, 시험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시에는 해당되지 않음

### ■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

-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

### 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

-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하여야 함

### ■ 도난차량

-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서류로써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의무 없음

### ■ 수리중인 차량

-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

### ■ 공휴일 기간 중

- 공휴일 기간이라도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공휴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
### ■ 교도소 수감 중

- 자동차 보유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가족들이 수감자의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함

### ■ 번호판 영치

-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 없음

### ■ 사업용 자동차의 휴업 또는 휴지

-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 면제됨

### ■ 차량 폐차 말소시(자진말소 및 차령초과말소)

- 차량 폐차말소 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,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함.

## ☎ 관계법령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